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

[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. 1. 30. 2012고합83,2012고합104(병합),2012고합122(병합),2012고합149(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4인

【검 사】정문식(기소, 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이균부 외 2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,500,000원에, 판시 제1의 나 내지 마 죄, 제4죄, 제5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, 피고인 2를 벌금 3,000,000원에, 피고인 3을 벌금 4,000,000원에, 피고인 4를 벌금 2,000,000원에, 피고인 0 5를 벌금 1,500,000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5로부터 630,000원을 추징한다.

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1